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하며,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납부를 허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며,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단서).

나.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에게 이양하도록 함(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함(제4조제10항 및 제14항 신설).

라.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함(제4조제4항).

마.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되,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까지만 허용함(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제8조제4항).

사. 지정개발자 약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제8조제4항 후단 신설).

아.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사용금지를 추가함(제8조제4항제1호).

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

차.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후단 및 제21조제5항·제6항 신설).

카.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제16조제2항).

타.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7항).

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제17조제2항 신설).

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거.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면제함(제28조제6항).

너.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함(제30조의3제2항 및 제42조제4항).

더.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제30조의3제6항 단서 신설).

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수한 주택 수만큼 우선공급을 허용함(제48조제2항제7호나목).

머.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

버.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함(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 자료공개 의무 등 청산인의 임무를 규정함(제81조제1항 및 제2항).

어. 시장 및 군수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도록 함(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4호의2 신설).

저. 전문조합관리인의 경우에도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84조, 제84조의3제2호·제5호, 제85조제5호 및 제86조제1호·제6호·제7호).

처.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대상에 청산인을 추가함(제84조).

커. 자료 미공개 및 거부, 속기록 미작성 등을 위반한 청산인에게도 벌칙을 부과함(제8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와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구청장등"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구청장등"으로 본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로, "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4조제5항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⑭ 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구청장등"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구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제5항 단서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제4조의3제6항 전단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 한다.

제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구청장"을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

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제15조제6항 중 "있다"를 "있으며, 위원장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한다.

제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조합(제4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추진위원회는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을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으로,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항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제2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3제6항 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주택에 대하여 인수자는 임대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제63조제1항 후단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외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외의"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임원"을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제81조제2항 중 "조합임원"을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장 및 군수의 경우에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4조제10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제84조 중 "위원장·조합의 임원"을 "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으로 한다.

제84조의3제2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추진위원장"을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5호 중 "임원"을 "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원"을 "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으로, "대표자를"을 "대표자와 청산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으로, "대표자를"을 "대표자와 청산인을"로 한다.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제3항·제7항, 제8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6항, 제19조제1항, 제28조제6항, 제30조의3제2항, 제42조제4항, 제48조제2항,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제2항제7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장 및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권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3일 이전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2014년 1월 14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았거나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용적률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수된 소형주택의 활용 및 인수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국유지·공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